

한국심리학회 연구진실성심사 운영세칙 제정의 의의와 앞으로의 과제*

김혜숙[†]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본 논문에서는 한국 심리학회에서 2009년 2월에 제정한 연구진실성심사 운영세칙 제정의 원칙, 의미 및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 세칙은 표절, 이중출판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출판관련 세부 규정들을 제안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새로운 점은 연구부정행위 심사의 주체와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또한 새로이 제정된 연구진실성심사 운영세칙의 한계와 앞으로의 개선점이 무엇인지 검토하였다. 아울러 현재의 한국 심리학회 연구윤리 관련 규정에서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고찰하여 그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주요어 : 한국심리학회, 연구진실성심사, 운영세칙, 심리학자윤리규정, 앞으로의 과제

* 이 논문은 2009년 한국심리학회에서 개최한 연구진실성 윤리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발표된 논문(김혜숙)의 일부를 포함한다.

† 교신저자: 김혜숙,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2008-2009 한국심리학회 상벌 및 윤리위원장, (442-74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 5번지

Tel: 031-219-2770, E-mail: hsk@ajou.ac.kr

현재 우리 사회에서도 연구 윤리에 대한 요구와 문제 제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최근 들어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외국 유명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일이 보다 빈번해지고 또한 외국 학자들과의 연구 교류가 드물지 않은 일이 되고 있는 데에 일부 기인한다. 이에 따라 보다 글로벌한 기준에 맞는 연구 윤리 의식 및 행동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자들의 인식이 제고될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2005년 황우석 전 서울대학교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 이후로 연구자들과 공직이나 행정직 진출을 시도하는 교수들에 대한 ‘표절’과 ‘이중출판’ 관련 검증으로 인한 시비와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보다 명확하고 진일보된 연구 윤리 기준을 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그럼으로써 연구자들이 이러한 기준에 대해 인식하고 그에 맞는 연구 의식과 행동을 갖추도록 할 필요성이 높아 졌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학술진흥재단(2006)이 연구윤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학회 지원이나 학회지 평가에 이러한 연구윤리 기준 마련여부를 반영하고 있고, 또한 각 대학마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만들어 지게 되어 자체적으로 교수들의 연구윤리 확립과 감시 및 심사를 위한 활동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2009년 2월 한국심리학회에서는 “연구진실성 심사 운영세칙”을 제정하여, 표절, 이중출판 등의 연구 부정행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또한 저자 순서의 문제나 공동저자의 범위 등에 대한 출판 업적 관련 세부 규정들을 제안하였다. 이 세칙은 또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의 절차, 예비조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 본조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그리고 판정과 조치 규정

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세칙은 따라서 심리학 연구자들이 보다 정직하고 윤리적인 연구 및 출판을 하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먼저 이와 같이 새로이 한국심리학회 연구진실성심사 운영세칙을 제정하게 된 의의와 제정 시 기준으로 삼은 원칙들을 설명하고, 다음 연구진실성심사 운영세칙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진실성심사 운영세칙에서의 미흡한 점과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논의하며, 또한 더 나아가 한국심리학회 윤리 규정(2003) 중 연구와 관련된 규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부록1에 새로이 제정된 한국심리학회 연구진실성심사 운영세칙이 제시되었다.

연구진실성심사 운영세칙 제정의 의의와 원칙

이 세칙 제정의 원칙과 의의는 1) 심리학회 회원들이 보다 시대정신에 맞고 진일보한 윤리 의식을 가지고 연구 및 출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2) 이러한 기준에 맞지 않는 행동들에 대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되, 3) 연구윤리의 문제는 여러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들을 포함할 수 있으므로 그 제재 조항을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도록 하였다. 그럼으로써 심리학회 회원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윤리적인 연구, 출판 및 전문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심리학회가 다른 학회보다 한발자국 앞서 이러한 연구진실성심사 윤리 규정을 제

정하게 된 데에는, 현재 심리학회 회원들의 수가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2009년 6500명을 넘고 있고 또한 이 회원들이 매우 활발한 연구 활동을 벌이고 있어 11개의 학회지를 발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당연하고 필요한 귀결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회원들의 보다 원활하고 건강한 연구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새로이 제정된 연구진실성 심사 세칙이 2003년에 제정된 한국심리학회의 윤리 규정 중에 포함되어 있는 연구윤리 규정에 비해 진일보했다고 볼 수 있는 점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부정행위를 주요부정행위(위조, 변조, 표절 및 이중출판)와 부적절행위(부적절한 논문저자 표기, 조사방해행위 등)로 구분하여 다루고 있어, 표절이나 이중 출판의 정의에 있어 보다 세부적으로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 또한 2) 공동저자의 규정과 저자의 순위에 대한 보다 세부적이고 자세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점. 무엇보다도 새로이 제정된 연구진실성심사 운영세칙이 이전의 심리학자 윤리규정과 차이가 나는 점은 3) 연구진실성 관련 제보 및 심사 절차,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판정과 조치에 대한 세칙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연구진실성 심사 세칙은 심리학회가 다른 학회보다 한발 앞서 제정한 것으로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2009. 4. 2. 한국과총)에서도 이러한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 세칙의 제정 과정은 우선, 2007-2008 한국심리학회 편집위원회(위원장: 이순목)에서 초안을 작성하였고, 그후 2008-2009 한국심리학회 상벌 및 윤리위원회(위원장: 김혜숙)에서 기존의 심리학자 윤리 규정과의 연관성을 고려하고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완성하였다. 또한 한국심리학회 이사회(2008 12월 이메일 이사회,

2009 1월 이사회)의 피드백을 받아 최종 수정을 하여 완성하였다. 이러한 세칙을 만드는 데 있어 참고한 문헌들은 “APA Ethical principles of psychologists and code of conduct”(2002), “연구윤리소개(2006, 교육인적자원부/학술진흥재단)”, “외국대학의 연구윤리확립 활동 사례”(2007, 교육인적자원부/한국학술진흥재단), “서울대학교 윤리규정”(2008),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2008), “이화여대 연구진실성위원회규정”(2003), “제4차 연구윤리 포럼-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도전과 실천”(2008, 교육과학기술부/학술진흥재단) 및 “Rights, Rules and Responsibilities”(Princeton University, 2006) 등이다.

한국심리학회

연구진실성심사 운영세칙의 주요 내용

여기서는 한국 심리학회 연구진실성심사 운영세칙의 주요 내용과 쟁점 사항들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보다 자세한 사례 중심의 설명은 이 특별 section의 최훈석교수의 논문과 2009 한국심리학회 연구진실성 관련 윤리 교육 심포지움 중 최훈석(2009)에서 제시하고 있다).

우선 연구진실성심사 운영세칙은 연구부정행위를 주요부정행위와 부적절 행위로 구분하는데, 주요부정행위에는 위조, 변조, 표절 및 이중출판이 포함되고, 부적절 행위에는 부당한 논문저자표시, 조사방해 행위, 연구비 부당 사용 등 주요부정행위처럼 직접 책임이 있는 심각한 행위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책임있는 연구 수행을 방해하거나 위해하는 행위들이 포함된다. 주요부정행위 중 ‘표절’(제2조 3항)은 ‘이미 발표되거나 출간된 타인의 연구 내용을 인용없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

로 변화시켜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사용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고, '타인이 기 발표한 연구 내용을 발취하여 사용할 때는 따옴표를 사용하여 인용하여야 한다'(제2조 3항의 3)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이 세칙은 특히 요즈음 논란이 빈번한 '이중출판'(혹은 이중 게재 혹은 자기 표절)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규정하고 예외 조항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제2조 4항). 즉, '자신이 이전에 출판한 연구 결과를 다시 출판하는 경우에 이중출판으로 규정되는데, 단 이때 새로이 게재하고자 하는 학술지에 이전 출판 사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를 받으면 이중출판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때도 원 논문을 인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중출판에 있어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는데, 1) 학위 논문을 학술지 논문으로 출판하는 경우, 2) 학술지 논문을 모아서 저서로 출간하는 경우, 또한 3) 학술지에 실었던 논문을 대중서나 교양 잡지 등에 쉽게 풀어쓴 경우, 혹은 4) 다른 편저자에 의해 선택되어 선집의 형태로 재출간되거나 또는 특집호로 게재되는 경우들이다. 단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들에서도 원 논문을 인용하여야 한다. 이중출판 규정에는 특히 동일한 연구를 다른 언어로 다른 독자들에게 소개할 경우도 이중출판으로 간주되지만 '다른 언어의 학술지에서 원 논문을 인지하고 그 편집장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 해당 언어로 출판하는 경우는 이중출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제2조 4항 5, 6)라고 규정하고 있어, 연구자들의 주의를 요한다. 이중출판 규정을 만들에 있어 특히 논란이 많았던 부분은 학술발표대회 발표집이나 심포지움 발표집 논문들의 경우이었는데, 이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 심리학회(특히 분과

학회)의 경우 학술대회나 심포지움 발표집의 수록 논문들이 거의 학술지 논문들과 동일한 정도의 내용과 길이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중출판에 해당할 소지가 높아지기 때문이었다. 이 경우도 논문을 출판하고자 하는 해당 학술지에 기존의 학술대회나 심포지움 발표 논문이었다는 점을 알리고 동의를 구하면 이중출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구진실성심사운영세칙은 또한 출판과 관련하여 저자 표기에 대한 사항을 제3조에 규정하고 있다. 이에서 주저자, 제1저자, 교신저자 및 공동저자의 역할과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저자로 명기되기 위해서는 '학술적·전문적 기여가 있는 경우'(제3조 3항)이고 '학술적·전문적 기여라 함은 실제로 글을 쓰거나 연구에 상당한 기여를 함을 의미한다'(제3조 4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기존의 심리학자 윤리 규정에서 출판시 저자 명기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 비해 보다 세밀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저자 명기의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출판업적 관련 조항에서 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제3조 5항의 학위논문 출판의 경우에 있어서의 저자 표기인데, 이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학생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논문을 실질적 토대로 한 여러 명의 공동저술인 논문에서는 학생이 제1저자가 된다. 단, 학위논문을 대폭 수정하거나 추가 경험자료를 수집하여 보완한 경우, 그리고 기타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할 때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우리 문화의 특성상 보다 약자의 위치에 있는 석·박사 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한 취지의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석사 혹은 심지어는 박사 학생의 논문도 지도교수의 연구와 지도에 의존되고 중복

되어 있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 우리 학계의 풍토상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 특별 section의 최훈석 교수 논문에서 사례와 함께 보다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 뒤에 다시 논의하겠다.

연구진실성심사 운영세칙은 제4조부터 19조까지에 걸친 상당한 부분을 연구진실성심사 절차 및 판정과 조치에 대한 규정으로 채우고 있다. 앞서서도 지적했듯이 기존의 심리학회 윤리 규정과 대비하여 이러한 심사 절차 및 판정과 조치에 대한 규정들이 새로이 제정된 연구진실성심사 운영세칙의 가장 뚜렷한 특징을 이루고 있다. 이 항목들은 크게 보아 적용 범위(제5조), 연구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절차(제8조), 예비조사위원회(제7조), 본조사위원회 구성과 절차(제13-18조) 그리고 판정 및 조치(제18조)들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제5조에서는 이 연구진실성심사의 적용 대상을 ‘한국심리학회 회원이 발표하는 출판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조항들에서는 심리학회 연구진실성 심사 절차(즉, 제보 및 예비조사위원회 구성, 본조사위원회 구성 및 최종 판정 및 조치 절차)의 주체를 전체학회(즉, 모학회) 상벌 및 윤리위원회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심사 절차를 예비조사위원회, 본조사위원회 그리고 상벌 및 윤리위원회의 최종 판정 및 조치 결정 단계의 세 단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으로 규정하는 특징을 가진다. 특히 이러한 세 단계의 심사절차는 대부분 두 단계(즉, 예비조사위원회, 본조사위원회)의 절차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연구진실성심사(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이화여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등) 규정과 다른 점이다. 이와 같이 세 단계로 심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보다 신중하게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 심사하여야 한다

는 취지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제 18조에 규정되어 있는 ‘판정 및 조치’ 사항에는 ‘연구부정행위 해당 논문은 학술지 논문 목록에서 삭제되고, 해당 저자(들)은 1-3년간 한국심리학회 산하 학술지에 투고를 금지한다. 또한 학회회원 자격 여부(회원자격 박탈, 회원자격 정지, 자격(면허) 상실, 자격(면허) 정지)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학술지 투고 금지 1-3년으로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심사 시 여러 상황들에 대한 충분하고도 융통성있는 고려를 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국심리학회 연구진실성심사 운영 세칙 및 한국심리학회 윤리 규정의 제한점과 앞으로의 개선을 위한 과제

이러한 연구진실성 심사 세칙은 앞서서도 지적했듯이 기존의 한국심리학회의 “심리학자 윤리규정”내에 포함되어 있는 연구윤리 관련 규정에 비해 보다 진일보하고 세밀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몇 가지 점에서 아직도 부족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우선 학술진흥재단의 연구윤리 기준(학술진흥재단 연구윤리실태조사, 2007)에 비추어 볼 때 부족한 부분은 1) 연구비 사용과 배분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에 관한 보다 구체적 규정 2) 연구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및 주체에 대한 규정 3) 회원들에 대한 정규적 윤리 교육에 관한 규정 4) 학회지 논문 및 연구비 지원 심사 행위 관련 윤리에 대한 규정 등이다. 또한 이번 연구진실성심사 운영세칙에 제시되어 있는 규정 중 애매모호하거나 논쟁의 여지

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들은 1) 이중출판 규정의 경우(제2조 4항 (1)), ‘...대부분의 연구 자료가 같거나 대부분의 문장이 같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기준이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중출판 관련 규정 문구의 모호성의 문제는 대부분 확실하게 ‘원 논문을 인용하거나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동의를 얻음으로써’ 방지될 수 있다. 또한 앞서도 지적했듯이 출판업적 조항에서 석박사 학위 논문에 대한 저자 표기 규정(제3조 5항)에서도 문제가 대두될 여지가 있다. 이는 2009년도 한국심리학회의 연구진실성관련 윤리 교육 프로그램 관련 토론에서 서울대 최인철 교수도 지적했듯이, 석박사 학위 논문을 출판할 경우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학생이 제1저자가 되는 것으로 규정한 항목의 문제점이다. 즉, 우리나라 학계의 풍토상 학위논문(특히 석사 논문의 경우)은 아이디어에서부터 논문 작성까지 지도교수의 개입이 상당한 정도로 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더욱이 지도교수의 연구비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경우도 꽤 있으므로, 석박사 학위를 토대로 한 논문의 제1저자를 학생으로 하는 것을 기본(default)으로 규정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교수가 수령한 연구비 연구의 일환으로 학위 논문을 수행한 경우 연구비지원 기관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러한 논쟁의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학계에서 보다 심층적이고 다각도의 논의와 이를 통한 문제해결책 마련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 외에 연구진실성심사 운영 세칙의 제1조 ‘목적’ 조항에서 ‘...심리학자의 연구 윤리를 확립하고...’의 경우와 제5조 ‘적용범위’

조항의 ‘...한국심리학회 회원이 발표하는...’의 경우에서 ‘심리학자’나 ‘심리학회 회원’의 규정이 정회원만 포함하는 것인지, 준회원까지 포함하는 명칭인지가 모호하다는 점이 위에서 기술한 연구진실성관련 윤리 교육 프로그램 관련 토론에서 충남대 장희숙교수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 이러한 모호점이나 문제의 여지가 있는 조항들은 이 심사 운영세칙을 실제로 운영해 가면서 지적되는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학회 차원에서 논의해 가면서 수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에 심리학회에서 제정한 연구진실성심사 운영세칙은 한국심리학회가 2003년에 제정한 심리학자 윤리 규정과 연관되어 있다. 이 ‘심리학자 윤리규정’은 심리학자가 연구자로서, 교육자로서 또한 전문가(practitioner)로서 지켜야 할 보다 포괄적 범위의 윤리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 심리학회에서 2003년에 제정하고 이듬해 수정하여 이제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 윤리규정은 “연구진실성심사 세칙”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많은 다른 윤리 이슈들을 포함한다. 이중 특히 중요하고, 또한 이제까지의 운영 결과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온 바, 앞으로 보다 세부적이고 업데이트된 윤리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연구 관련 규정들을 중심으로 아래에 지적해 보았다.

1. 현재의 심리학자 윤리규정이 가지는 보다 기본적 문제는 윤리위원의 보고나 제보 절차에 대한 규정이 아예 없고 또한 심사 주체나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심리학자 윤리규정 제 4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 제보된 윤리 문제에 대해 학회 상벌 및 윤리위원회와 산하학회의 양자 모두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윤리문제 주

관 주체를 보다 명확히 하고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심리학자 윤리 규정은 또한 윤리 위반이 있을 때의 조치나 판정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연구 수행 관련 기타 윤리의 문제(23, 24, 28, 29, 30조): 연구참여자에 대한 책임, 연구 참여에 대한 서면 동의, 연구에서 속임수 사용의 문제, 사후설명 등. 이 규정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할 때 직접 현장에서 부딪히는 상황에서의 윤리문제로, 특히 연구참여자의 인권과 관련되는 문제이므로 그만큼 중요해진다. 한편 우리의 문화와 연구 현실은 구미와는 다를 수 있어 무조건 구미의 기준에 맞추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 특별 section의 정경미 교수 논문과 정경미(2009)에서 자세히 제안하고 있는 학과윤리위원회의 규정과 일부 중복될 수 있는데, 관련 심리학자 윤리 규정을 개정하고 재정비해서 학과윤리 규정을 만들 때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이와 같이 연구나 교육 및 치료관련 윤리 규정이 강화되어 여러 가지 제재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복권이나 구제 절차 등에 대한 고민과 논의도 앞으로는 필요해 질 수 있다.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심리학자 윤리규정이나 연구진실성심사 운영 세칙은 심리학회 회원들이 보다 성숙하고 진일보한 윤리 의식을 가지고 연구 활동을 하도록 함으로써 연구 활동이 보다 건강하게 활성화되고 글로벌화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일차적 목적이 있다. 또한 그럼으로써 학계가 보다 건강한 활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 윤리나 평가 혹은 더 나아가서 치료 관련 윤리 문제와 쟁점들에 대한 학회 차원의 장기적이고 꾸준한 논의 및 연구와 학회 회원들에 대한 교육의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APA (2002). *Ethical principles of psychologists and code of conduct*.
- Princeton University (2006). *Rights, Rules and Responsibilities*.
- 김혜숙 (2009). 연구진실성심사 운영세칙 제정의 의의와 앞으로의 윤리규정 과제. 한국심리학회 2009 연차학술대회 학술발표논문집. pp.94-95.
- 서울대학교 (2008).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 이화여대 (2003).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 정경미 (2009). 학과윤리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및 고려 사항. 한국심리학회 2009 연차학술대회 학술발표논문집. pp.98-99.
- 최훈석 (2009). 연구 진실성 세칙. 한국심리학회 2009 연차학술대회 학술발표논문집. pp.96-97.
- 한국심리학회 (2003). 심리학자 윤리 규정.
- 학술진흥재단 (2006). 연구윤리소개. 서울.
- 한국학술진흥재단 (2007). 외국 대학의 연구윤리 확립 활동 사례. 서울
- 한국학술진흥재단 (2007). 연구윤리실태조사.
- 학술진흥재단 (2008). 제4차 연구윤리포럼-연구 윤리 확립을 위한 도전과 실천. 서울.
- 1차원고접수 : 2009. 10. 10.
수정원고접수 : 2010. 2. 28.
최종게재결정 : 2010. 3. 1.

The significance of the KPA's Regulations of Reviewing Procedures for Research Integrity and the remaining tasks

Hai-Sook Kim

Ajou Univeristy

The present paper introduced the principles, significance as well as the major contents of establishing the new KPA's Regulations of Reviewing Procedures for Research Integrity, which was made by KPA in 2009. KPA's Regulations of Reviewing Procedures for Research Integrity includes regulations on such unethical acts as plagiarism and double publication,, detailed regulations on publication, as well as the rules for reviewing procedures for unethical research acts. I also indicated the limits and the improvement to be needed in the future of this newly made Regulations. Finally, I also made some suggestions for future tasks for the improvement of the present Ethics Regulations of KPA, related to research ethics.

Key words : KPA, Regulation's of Reviewing Proceduares for Research Integrity, KPA's ethics code, future tasks

〈부록 1〉

한국심리학회 연구진실성 심사 운영 세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심리학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한 심사·판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정의) 연구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주요부정행위(위조·변조·표절·이중출판)와 부적절행위를 말한다.

1. 주요부정행위

주요부정행위는 위조, 변조, 표절, 이중출판을 포함한다.

-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자료(data)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이다.
- 2) “변조”라 함은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data)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이다.
- 3) “표절”이라 함은 이미 발표되거나 출간된 타인의 연구 내용 결과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 없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변화시켜 사용하는 경우이다.

이는 사용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 (1) 이미 발표되거나 출간된 타인의 연구 결과 중 핵심 개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없이 본인의 연구 개념처럼 발표·출간한 경우 표절에 해당한다. 이는 사용언어, 문장, 표현이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 (2) 통상적으로 타인 논문에서 연속적으로 두 문장 이상을 인용 없이 동일하게 발췌·사용하는 경우 표절이다. 이는 사용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 (3) 타인이 기 발표한 연구 내용을 발췌하여 사용할 때에는 따옴표를 사용하여 인용하여야 한다. 단, 학술지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다.
- (4) 기 발표된 타인의 연구 결과가 이미 교과서 또는 공개적 출판물에 게재된 아이디어, 사실, 공식, 기타 정보로서 일반적 지식으로 통용되는 경우 인용하지 않고 논문에 사용할 수 있다.

4) 이중출판

국내외 출판을 막론하고 심리학자는 이전에 출판된 연구결과(출판 예정이나 출판심사중인 자료 포함)를 새로운 결과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연구자료(data)나 결과를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때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심사 요청 시에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중출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1)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 결과를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출간하는 경우, 이중출판으로 주요부정행위이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 자료가 같거나 대부분의 문장이 같은 경우도 이중출판에 해당할 수 있다. 학위논문을 학술지논문으로 출판하

- 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2) 학술지논문으로 발표된 연구결과들을 모아서 저서로 출간하는 경우는 이중출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이 경우에도 기 발표된 출처를 명시하고 이미 발표된 결과들을 충실히 인용하여야 한다.
 - (3) 학술지에 실었던 논문내용을 대중서, 교양잡지 등에 쉽게 풀어 쓴 것은 이중출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경우 원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 (4) 연구자는 투고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짧은 서간 형태(letter, brief communication 등)의 논문을 출간할 수가 있다. 짧은 서간 논문을 출간한 후 긴 논문을 추가 출간하는 경우나, 연구 자료를 추가하거나, 해석이 추가되거나, 자세한 연구 수행과정 정보 등이 추가되는 경우는 이중출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 (5) 이미 출판된 논문이나 책의 일부가 원저자의 승인 하에 다른 편저자에 의해 선택되고 편집되어 선집(anthology)의 형태로 출판되거나 학술지의 특집호로 게재되는 경우 이중출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6) 동일한 연구 결과를 다른 언어로 다른 독자에게 소개할 때 원 논문을 인용할 경우는 이중출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7) 동일한 연구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투고하는 것은 이중출판으로 간주한다. 단, 다른 언어의 학술지에서 그 논문을 인지하고 그 편집장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 해당 언어로 번역하여 투고하는 경우는 이중출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8) 이미 출판한 학술지 논문이나 학술대회 발표집 논문 혹은 심포지움 발표집 논문을 타 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술지의 동의가 있으면 이중출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단 이 경우 원 논문을 인용해야 한다.

2. 부적절행위

주요부정행위처럼 직접 책임이 있는 심각한 행위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책임 있는 연구 수행을 방해하거나 위해하는 행위이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의 각 호와 같다.

1)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그렇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단순히 어떤 지위나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 기재되는 것은 연구부적절행위이다.

2) 조사방해 행위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3) 연구비 부당사용 및 연구결과 과장홍보

4) 주요부정행위 교사·강요

타인에게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5) 주요연구부정행위로 인한 결과의 직접 인용

과거에 발생한 주요부정행위의 결과를 직접 인용하여 연구의 내용을 구성할 경우 부적절행위에 해당된다. 단 학회에서는 이러한 주요부정행위 논문이나 출판에 대해 회원들에게 충분히 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출판 업적

1. 심리학자는 자신이 실제로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용어정의
 - 1) 주저자(책임저자)는 주연구자, 연구그룹장(팀장) 또는 실험실 책임자 등이 된다. 주저자의 역할은 논문에 포함된 모든 자료를 확인하며 연구결과물의 정당성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일 그리고 논문원고 준비동안에 공저자간의 의견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도 맡는다. 주저자는 제1저자, 공동저자, 또는 교신저자가 될 수 있고,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저자명 기재의 순서를 정하기 위하여 저자들간 합의를 도출한다.
 - 2) 제1저자는 저자순서에서 제일 처음에 위치한 연구자로서 자료/정보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결과를 해석, 원고의 초안을 작성한자로 규정한다. 주저자가 제1저자가 될 수도 있다.
 - 3) 교신저자는 투고저자라고도 하며 학술지에 논문을 출판하기 위하여 원고를 제출하는 저자로 논문투고, 심사자와 교신역할을 하며, 연구물의 첫장 각주에 교신저자의 연락처를 제시한다. 논문의 교신저자는 저자들간 합의에 따라 주저자, 제1저자, 또는 공동연구자가 할 수 있으며 학위논문에 기초한 경우 학생 또는 논문지도교수가 할 수 있다.
 - 4) 교신저자가 주저자가 아닌 경우에는 연구물의 첫 장 각주에 주저자의 연락처도 제시해야 한다.
 - 5) 공동저자는 연구의 계획, 개념확립, 수행, 결과분석, 및 연구결과 작성 과정에서 중요한 연구정보를 상의하고 결론에 도달하는데 기여한 자를 말한다.
3. 출판물에서 저자로 기재되는 경우는 학술적·전문적 기여가 있을 때에 한정된다.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하는 것으로 한다.
4. 학술적·전문적 기여라 함은 실제로 글을 쓰거나 연구에 대한 상당한 기여를 의미한다. 상당한 기여는 가설이나 연구문제의 설정, 실험의 설계, 통계분석의 구조화 및 실시, 그리고 결과해석을 포함하는 주요부분의 집필을 포함한다.
5.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학생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논문을 실질적 토대로 한 여러 명의 공동 저술인 논문에서는 학생이 제1저자가 된다. 단, 학위논문을 대폭 수정하거나 추가 경험자료를 수집하여 보완한 경우, 그리고 기타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할 때는 그렇지 아니하다.
6. 학위논문의 축약본이나 일부를 출판할 경우 그러한 사항을 논문 첫 쪽의 각주에 명시한다.

제4조(절차에 대한 정의)

1. “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상벌 및 윤리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2.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상벌 및 윤리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연구부정행위의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3. “예비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본 상벌 및 윤리위원회가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말한다.
4. “본 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5. “판정”이라 함은 본 조사를 완결하고, 결과에 대한 처리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5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한국심리학회 회원이 발표하는 출판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이 세칙이 발효되는 시점 이후의 출판물에 국한하여 적용한다.

제6조(적용절차)

1. 제보 또는 상벌 및 윤리위원회의 인지에 의해서 혐의가 접수된지 15일 이내에 상벌 및 윤리위원장은 예비조사를 위해서 연구진실성예비조사위원회(이하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예비조사 결과로 본조사의 필요가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상벌 및 윤리위원장은 연구진실성 본조사위원회(이하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3. 본조사위원회로부터 본조사완결보고서를 접수한 후 상벌 및 윤리위원회에서 최종판정과 조치를 결정하면, 상벌 및 윤리위원장은 1주일 이내에 판정사항을 관계자(제보자, 기고자) 및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에 알린다.
4.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제7조(예비조사위원회)

1. (구성)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상벌 및 윤리위원회에서 선정하며 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한다.
2. (위원장)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회의)
 -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회의는 심의안건에 따라 가능한 경우 전자우편 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 4)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제8조(연구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1. 제보자는 상벌 및 윤리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

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 명 및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보자의 신분에 대한 비밀보장은 철저히 한다.
3.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9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1. 예비조사는 제보·인지의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를 상벌 및 윤리위원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완료한다.
2.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1) 제보내용이 본 학회의 연구진실성 심사 운영세칙 제2조가 정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제10조(예비조사 결과보고서)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 부정행위 혐의
3.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11조(예비조사 결정) 예비조사에서 결정한 본 조사 실시 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서 통보한다. 단, 익명 제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제12조(본 조사 착수 및 기간)

1. 예비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2. 본 조사는 조사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3.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4. 본조사위원회는 본 조사 결과보고서를 상벌 및 윤리위원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임무를 완료한다.

제13조(본조사위원회의 구성)

1. 본조사위원회는 상벌 및 윤리위원회가 한국심리학회 편집위원회 혹은 관련 분과학회와 공조하여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한다.
3.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1.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2. 본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출석요구와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예비조사 또는 본 조사에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1.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2. 연구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판정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관련 위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6조(본 조사에서 제척·기피 및 회피)

1. 위원이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사에서 제척된다.
2. 본조사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3. 본조사위원에게 조사수행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위원을 기피할 수 없다.
4. 본조사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회피 할 수 있다.

제17조(본 조사에서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1. 본조사위원회는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내용 등을 토대로 본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상벌 및 윤리위원장에게 제출한다.
2. 본 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 내용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물
 - 3) 해당 연구물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4) 관련 증거 및 증인
 -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 6) 연구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결론 및 판정/조치에 대한 추천
 - 7) 조사위원 명단 및 서명

제19조(판정 및 조치)

1. 상벌 및 윤리위원장은 본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상벌 및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판정 및 조치를 결정한다
2. 연구 부정행위 해당논문은 학술지 논문목록에서 삭제되고, 해당저자(들)은 1- 3년간 한국심리학회 산하 학술지에 투고를 금지한다. 또한 학회 회원 자격 여부(회원자격박탈, 회원자격정지, 자격(면허) 상실, 자격(면허)정지)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다.

제20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1.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상벌 및 윤리위원회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본 조사 결과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칙: 본 연구진실성 심사 운영 세칙은 2009년 2월 25일부터 실시한다.